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보험협회 규약 관련 의견 수렴 절차) 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란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가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절차를 말한다.

제4-35조의2제9항제1호 중 “영 제96조의2”를 “영 제96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85조 단서 및 제9-16조제2항”을 “법 제185조 제1항제2호 및 제9-16조제2항 및 제4항”으로, “제9-16조제3항”을 “제9-16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9-16조제2항제1호”를 “법 제185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7-19조제1항제1호 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를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7-82조제3항제1호 중 “2인”을 “3인”으로 한다.

제9-16조제1항 중 “법 제185조에서 정한 ”보험계약자 등“”을 “법 제185조제1항제2호의 ”보험계약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85조제1항제2호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착수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한 경우를 말한다.

제9-16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85조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이란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법 제187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자일 것
2.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법 제186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제9-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탁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4. 법 제185조제1항제2호의 동의와 관련하여 협회가 마련한 보험회사의 표준동의기준에 부합할 것“

④ 보험계약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보험회사와는 별개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

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거나 별도의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

제9-1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보험계약자 등이 제2항 및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16조제4항과 제5항을 제6항과 제7항으로 하고, 제6항은 삭제한다.

제9-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6조의2(손해사정 위탁평가)①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전문성, 인적자원, 경영 안정성, 소비자 만족도, 내부통제 수준,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사정 업무 위탁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사정 위탁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선정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보험협회는 손해사정업자 위탁평가기준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범규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 위탁평가기준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별로 보험금액·손해율 등을 평가하여 사실상 보험금을 삭감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2. 손해사정업자별 손해율 총량한도 등을 제한하는 행위
 3.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담보별로 보험금의 부지급, 인위적인 삭감을 유도하는 행위 등 손해사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는 행위
- ④ 영 제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에 손해사정업무 위탁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9-18조제1항 단서 외의 부분 중 "(법 제185조 단서"를 "(법 제185조 제1항제2호"로 한다.

제 9-18조의2부터 제9-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8조의2(손해사정교육협의회) ① 보험회사, 보험협회 등은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영 제96조의7제3항에 따른 단체(이하 "손해사정교육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손해사정교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자 1인
2.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정하는 자 각 1인
3.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정하는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담당 임원 각 1인
4. 보험연수원장이 정하는 자 1인

5. 한국손해사정사회의 장이 정하는 자 1인

6.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이 정하는 자 1인

7. 한국손해사정사회의 장이 정하는 손해사정업자 임원 1인

③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교육협의회의 장은 제2호의 위원이 1년씩 담당한다.

④ 손해사정교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교육기관이 적용할 표준 교육과정 마련

2. 외부교육을 강의하는 강사 지정 및 취소

3. 교육계획 확인 및 교육결과 점검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업무

⑤ 손해사정교육협의회는 교육 실시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업무의 처리내용을 연 1회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18조의3(손해사정사의 교육기준) ① 영 별표 4 제4호라목에 따른 교육시간은 20시간(보조인은 15시간, 2개 이상 종목의 손해사정 자격 보유시 30시간)을 말한다.

② 영 별표 4 제4호라목에 따른 외부 교육은 보험연수원,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 각 호의 강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 금융감독원, 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관계 단체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보험법규, 「상법」 등 보험관련 전공자로서 「고등교육법」 제14

조제2항에 따른 교원 및 제17조에 따른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로 일하는 자

제9-18조의4(손해사정업자 공시) ① 손해사정업자는 매 반기 말로부터 3월 이내에 법 제17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손해사정사가 5인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손해사정 실적이 없는 손해사정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96조의8 제3호에서 “그 밖에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주소, 대표자의 성명
2.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사의 조직, 재무, 손익 및 경영지표
4. 선임 및 위탁계약 체결현황
5. 최근 5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 이상의 지적을 받은 내용 및 사유

9-20조제1항, 제4항, 제6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 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보험계약체결방법) ① 외 국보험회사는 우편, 전화, <u>모사 전송</u>,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거주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 의 설명의무) ① ~ ⑧ (생 략) ⑨ (생 략) 1. 해당 보험사고 및 보험금 청 구가 법 제185조 및 <u>영 제96조 의2</u>에 따른 손해사정 대상인지 여부 2. 제1호에 따른 손해사정 대상</p>	<p>제1-6조(보험계약체결방법) ① - -----<u>팩스</u> ----- ----- --.</p> <p><u>제4-5조의2(보험협회 규약 관련 의견 수렴 절차) 법 제85조의3 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바”란 이해관계자 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보 험협회가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 고하는 등의 절차를 말한다.</u></p> <p>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 의 설명의무)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1. ----- -----<u>영 제96조 의3</u>----- --- 2. -----</p>

인 경우 보험계약자 등은 법 제 185조 단서 및 제9-16조제2항에 따라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제9-16조제3항에 따른 손해사정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자 등이 제9-16조제 2항제1호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보험회사의 동의기준

4. ~ 5. (현행과 같음)

⑩ ~ ⑪ (현행과 같음)

제7-19조(경영개선명령) ① (생략)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2. (생략)

② (생략)

제7-82조(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 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법 제 185조제1항제2호 및 제9-16조 제2항 및 제4항-----

-----제9-16조제5항-----

3. -----법 제185조 제1항제2호-----

4. ~ 5. (현행과 같음)

⑩ ~ ⑪ (현행과 같음)

제7-19조(경영개선명령) ① (현행과 같음)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82조(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2인

2. ~ 6. (생략)

④ ~ ⑧ (생략)

제9-16조(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① 법 제185조에서 정한 “보험계약자 등”이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피해자·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② 보험계약자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의한다.

1.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3.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

1. -----

----- 3인

2. ~ 6.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9-16조(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① 법 제185조제1항제2호의 “보험계약자 등”

-----.

② 법 제185조제1항제2호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착수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한 경우를 말한다.

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
한 때.

4.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
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
고자 할 때.

<신 설>

③ 법 제185조제2항의 “금융위
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
임에 관한 동의기준”이란 제2
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손
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고
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법 제
187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자일 것

2.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고
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법 제
186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
하였을 것

3.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고
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제9-21
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예탁금을 예탁하거나 인허
가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신 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보험계약자 등은 손해사정사

4. 법 제185조제1항제2호의 동의와 관련하여 협회가 마련한 보험회사의 표준동의기준에 부합할 것

④ 보험계약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보험회사와는 별개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거나 별도의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

⑤ 보험계약자 등이 제2항 및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현행과 같음)

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임된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는 법 제185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

⑥ 협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동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신 설>

⑦ (현행과 같음)

<삭 제>

제9-16조의2(손해사정 위탁평가)

①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전문성, 인적자원, 경영 안정성, 소비자 만족도, 내부통제 수준,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사정 업무 위탁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사정 위탁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선정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보험협회는 손해사정업자 위탁평가기준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범규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 위탁평가기준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별로 보험금액·손해율 등을 평가하여 사실상 보험금을 삭감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2. 손해사정업자별 손해율 총량 한도 등을 제한하는 행위

3.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담보별로 보험금의 부지급, 인위적인 삭감을 유도하는 행위 등 손해사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는 행위

④ 영 제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에 손해사정업무 위탁

<신 설>

제9-18조의2(손해사정교육협의회) ① 보험회사, 보험협회 등은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영 제96조의7제3항에 따른 단체(이하 “손해사정교육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손해사정교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자 1인

2.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정하는 자 각 1인

3.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정하는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담당 임원 각 1인

4. 보험연수원장이 정하는 자 1인

5. 한국손해사정사회의 장이 정하는 자 1인

6.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이 정하는 자 1인

7. 한국손해사정사회의 장이 정하는 손해사정업자 임원 1인

③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교육협회의 장은 제2호의 위원이 1년씩 담당한다.

④ 손해사정교육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교육기관이 적용할 표준 교육과정 마련

2. 외부교육을 강의하는 강사 지정 및 취소

3. 교육계획 확인 및 교육결과 점검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업무

⑤ 손해사정교육협회는 교육 실시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업무의 처리내용을 연 1회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18조의3(손해사정사의 교육 기준) ① 영 별표 4 제4호라목에 따른 교육시간은 20시간(보조인은 15시간, 2개 이상 종목의 손해사정 자격 보유시 30시간)을 말한다.

② 영 별표 4 제4호라목에 따른 외부 교육은 보험연수원, 보험

<신 설>

요율 산출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 각 호의 강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 금융감독원, 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보험법규, 「상법」 등 보험 관련 전공자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및 제17조에 따른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로 일하는 자

<신 설>

제9-18조의4(손해사정업자 공시)

① 손해사정업자는 매 반기 말로부터 3월 이내에 법 제17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손해사정사가 5인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손해사정 실적이 없는 손해사정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96조의8 제3호에서 “그 밖에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주소, 대표자의 성명
2.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사의 조직, 재무, 손익 및 경영지표
4. 선임 및 위탁계약 체결현황
5. 최근 5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 이상의 지적을 받은 내용 및 사유

제9-20조(보험회사의 의무) ①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금청구권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9-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탁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사가 작성·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

제9-20조(보험회사의 의무) ① <삭제>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

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
여야 한다.

⑤ (생략)

⑥ 협회는 보험회사의 불공정한
손해사정 위탁 수수료 지급 및
불합리한 손해액 또는 보험금의
감액 사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손해사정업무 위탁 모범규
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⑤ (현행과 동일)

⑥ <삭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보험과
연 락 처	02-2100-2964